

의안번호	제 51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9월 3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 안 번 호	510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감사·조사 대상기관 근거조항 정정 및 대상기관 추가, 약칭 등 자구 정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련 근거조항 정정 및 대상기관 추가(안 제5조)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충청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 도 및 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하는
- 약칭규정 반영 및 대상기관 명확화
 - (제2조제5항) 의회의장 → 충청북도의회의장
 - (제4조제2항) 일비 → 수당
 - (제9조, 제10조, 제13조) 도지사 → 도지사 및 교육감
 - (제10조제1항) 영 → 같은 법 시행령
 - (제11조) 법 제9조제1항 → 제9조제1항,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 (제19조) 도 → 도 및 교육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관련부서 협의 :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함.
- 다. 기타
 - 1) 입법예고: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의회의장**”을 “**충청북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충청북도의**”를 “**도 및 교육청의**”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중 “**도지사 또는**”을 각각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43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및 교육감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 2**”로 한다.

제13조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 또는 해당기관의”를 “도 및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의”로,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를 “도 및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에서”로, “도 또는 해당기관에”를 “도 및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 7. (생 략)

8.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충청
북도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
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
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본회
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
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
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생 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1. ~ 7. (현행과 같음)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도 및 교육청의 -----

----- . -----

----- 도 및 교육청의 -----

② (현행과 같음)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
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
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
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
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제출·불출석·증언 또는 선서거부 사실 통보 등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③ -----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

-----.

④ ~ ⑥ (현행과 같음)

(2) -----

도지사가 부과 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도지사 및 교육감이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

-----.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

--- 별표 2 -----
-----.

제13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도지사 및 교육감은 -----

-----.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p>처리) ① (생 략)</p> <p>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u>도 또는 해당기관의</u>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u>도 또는 해당기관에서</u>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u>도 또는 해당기관에</u> 이송한다.</p> <p>③ <u>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u>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도 및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의</u> ----- ----- ----- <u>도 및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에서</u> ----- ----- <u>도 및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에</u>-----.</p> <p>③ <u>도 및 교육청</u> ----- ----- -----.</p>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 가. 지방직영기업
- 나. 지방공사
-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 울특별시 70,000, 광 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